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장위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11호(2008.04.03.)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90호(2011.09.29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0호(2013.01.1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되고 2008.07.30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009-79호(2009.07.22.)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4-01호(2014.01.02.)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5-31호(2015.02.26)호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5-30호(2015.02.26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의 명칭 : 장위1재정비촉진사업

2. 사업시행자

가. 주 소 :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03-14 3층 (☎ 943-5384)

나. 성 명 :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덕재

3. 사업시행계획 (변경없음)

가. 사업명칭 :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성북구 장위동 144-24번지 일대

다. 시행면적 : 80,513.30㎡

라. 건축계획

┌ 획지1-1 : 지하2층/지상29층, 10동, 공동주택(아파트) 939세대 및 부대
| 복리시설

└ 획지1-2 : 지하2층/지상12층, 1동, 공동주택(도시형생활주택) 90세대
및 근린생활시설/교육연구시설

마. 정비기반시설 : 도로 15,129.50㎡, 학교 19,464.20㎡, 청소년수련시설 450.30㎡
녹지 5,274.80㎡, 공공공지 1,032.40㎡, 공공청사 299.50㎡

4. 변경 내용

구 분	기 존	변 경	변경사유
사업시행기간	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4개월	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44개월	사업시행기간 만료예정 (2016.7.21.)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연장

5. 공람기간 : 2016. 6. 23 ~ 2016. 7. 7 (14일간)

6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(☎ 2241-2832)

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(☎ 943-5384)

7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와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비치하고 있으니 공람하시기 바라며,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1. 공고문(안) 1부.

2. 공람의견서 1부. 끝.

주무관 **이일순** 재정비사업1담당 **강우균** 주거정비과장 **정택근** 도시환경국장 06/21 **최성태**

협조자

시행 주거정비과-9328 () 접수 ()

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 전화 02-2241-2832 / 전송 02-2241-6545 / august@sb.go.kr / 대시민공개